

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2006 - 38
----------	-----------

발의연월일 2006년 7월 20 일
발 의 자 신주범 의원 외 9 인

1. 제안이유

-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으로 소속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 등을 조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제명 “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”을 “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”으로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함
- 전문위원별 직급 [별표]를 조정함(안 제3조)

위원회 명	직 위	직 렬	직 급
총무위원회	전문위원	행정	지방행정사무관
산업건설위원회	전문위원	행정·농업 토목·건축	지방행정·농업· 토목·건축사무관
특별위원회	전문위원	행정	지방행정주사

3. 개정규칙안 : 붙임

5. 참고사항

-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” 을 “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” 으로 한다.

제3조의 별지를 별표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전문위원별 직급(제3조 관련)

위원회명	직 위	직 렬	직 급
총무위원회	전문위원	행 정	지방행정사무관
산업건설위원회	전문위원	행정 · 농업 · 토목 · 건축	지방행정 · 농업 · 토목 · 건축사무관
특별위원회	전문위원	행 정	지방행정주사